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37
----------	--------

제출년월일 : 2019. 11.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민상의 명칭을 삭제하고 관련 부문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표창 서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민상의 시상 부문 수정(안 제9조제2항)
 - 구민상의 명칭을 삭제하고 관련 부문으로 조문을 개정
- 나. 일부 표창장 서식 변경(안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6호)
- 다. 기타 표현 정비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10. 14. ~ 11. 4. (제출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동의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9. 11.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를 “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상, 체육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어버이상, 효행·선행상, 봉사상, 지역발전상의”를 “문화, 체육, 용감한 구민, 장한어버이, 효행·선행, 봉사, 지역발전 관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6호에 따른 표창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액자메달형 표창장]



※ 표창장에 적용하며, 내용 및 기타 표기사항은 수정하여 사용

[액자]

- 재질 : 나무*유리
- 크기 : 350mm(가로)×260mm(세로)×15mm(두께) / 30mm(액자테두리두께)
- 하단인쇄 : 금색 실크스크린
- 색상 : 브라운

[내지]

- 크기 : 297mm × 210mm
- 제작 : 옅은인쇄
- 색상 : 바탕 흰색, 테두리 진한노랑

[배지관련]

1. 띠

- 크기 : 36mm × 50mm /36mm × 10mm
- 재질 : 천
- 색상 : 군청, 흰색, 빨강 3색

2. 배지

- 크기 : 70mm(최장지름)
- 재질 : 금속
- 색상 : 구회장 MAPO Sky Blue, 빨강, 녹색, 흰색, 금색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p> <p>1. · 2. (생 략)</p> <p>3. <u>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u></p>	<p>제8조(감사장)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의</u> ----- -----</p>
<p>제9조(구민상) ① (생 략)</p> <p>② <u>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문화상, 체육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어버이상, 효행·선행상, 봉사상, 지역발전상의 7개 부문으로 한다.</u></p> <p>③ (생 략)</p>	<p>제9조(구민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문화</u>, <u>체육, 용감한 구민, 장한어버이, 효행·선행, 봉사, 지역발전</u> <u>관련</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p> <p>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단서 신설></p> <p>② (생 략)</p> <p><신설></p>	<p>제10조(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p> <p>① ----- ----- ----- . 다만, <u>제6조제6호에 따른 표창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6호서식] [액자메달형 표창장]</p>



※ 표창장에 적용하며, 내용 및 기타 표기사항은 수정하여 사용

[액자]

- 재질 : 나무*유리
- 크기 : 350mm(가로)×260mm(세로)×15mm(두께) / 30mm(액자테두리두께)
- 하단인쇄 : 금색 실크스크린
- 색상 : 브라운

[내지]

- 크기 : 297mm × 210mm
- 제작 : 오프셋인쇄
- 색상 : 바탕 흰색, 테두리 진한노랑

[배지관련]

1. 띠

- 크기 : 36mm × 50mm / 36mm × 10mm
- 재질 : 천
- 색상 : 군청, 흰색, 빨강 3색

2. 배지

- 크기 : 70mm(최장지름)
- 재질 : 금속
- 색상 : 구취장 MAPO Sky Blue, 빨강, 녹색, 흰색, 금색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10조1항 단서 신설

“다만, 제6조제6호에 따른 표창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총무과 이승희 (☎ 3153-8214)